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내규

시행: 2023. 03.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대학원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이하“학칙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동서의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East-West Medical Science. 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 ①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단, 통합과정은 비의학계열 학과에만 두며, 비학위과정으로 학기에 따라 전문가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개설학과는 [별표1]과 같으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전공·계열 및 입학정원)

- ① 본 대학원에는 동서의학과, 융합건강과학과, 노인학과, 의학영양학과, 미래식품학과를 두며 전공분야 및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 ② 동서의학과는 의학계열로 구분하며, 의학영양학과·융합건강과학과·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노화의과학),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의학영양학), 미래식품학과는 이학계열로 구분하며, 노인학과 노년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노년학)은 사회계열로 구분한다.
- ③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50명, 박사학위과정 20명으로 하며, 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의 정원에서 선발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계약학과 정원

제2장 학사운영위원회 및 직제

제4조(직제)

- ① 본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전공)지도교수 및 본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은 학사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학사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서의학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전공) 지도교수의 당연직 위원과, 전임교원 중 원장이 임명한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본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 궐석시 위원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을 회의에 대리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학과 및 전공분야의 신설 또는 폐지, 비학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계과정 및 공동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6. 본 대학원이 위임한 사항 및 내규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의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지도교수 및 전임교원)

- ① 본 대학원은 각 학과(전공)별로 1인의 지도교수를 둔다.
- ② 학과(전공) 지도교수는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단,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본 대학원 전임교원이 본 대학원 외의 기관에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입학

제8조(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 ①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실시하는 정시전형과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에 의한다.
- ② 정원 외 특별전형은 매 학기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일은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9조(지원자격)

-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입학일 이전 취득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입학일 이전 취득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0조(입학취소)

본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1.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허위 또는 부적격 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학한 자

제11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학사 또는 석사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편입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4. 자기소개서
5. 연구계획서
6. 이력서
7.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8. 연구실적물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9.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2조(전형방법)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심사로 한다.
- ②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시험에 대한 세부사항 및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편입학)

- ① 학위 과정별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여석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위과정 2기 또는 3기에 편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각 과정에 편입학한 자의 기수 배정 및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재입학)

- ① 본 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게 학위과정별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여석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 학기와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금액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 ④ 3회 이상 제적된 자 또는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입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을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4학점 미만 : 등록금의 1/2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④ 의학영양학과 임상영양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에게 현장실습과정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장실습비를 등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현장실습비는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4장 수업·학점 및 성적

제16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개 학기),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개 학기)으로 한다.

제17조(수업)

- ① 본 대학원의 강의, 연구실습 및 시험 등을 각 과정 및 학과(전공)별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대학원장은 다른 대학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 ③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업 출석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3분의 2 미만일 때에는 해당 교과목

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18조(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 ① 본 대학원생의 과정별, 학과(전공)별 이수과목은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과정에 따르며, 각 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논문지도학점을 제외하고 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학위과정 36학점으로 하며, 통합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4학점 이내에서 석사학위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의학영양학과에는 국내·외 전문 임상영양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목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과정의 수료)

- ①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교과과정 및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시기는 매 해당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20조(학기당 취득학점)

- ① 본 대학원생의 학기당 최대 취득가능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로 한다. 단, 논문지도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의학영양학과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21조(학점당 수업시간)

본 대학원의 학점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습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제22조(성적평가)

- ①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은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② 성적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4.3	100
	4.25	99
	4.2	98
	4.1	97
A0	4.0	96
	3.9	95
	3.8	94
A-	3.7	93
	3.6	92
	3.5	91
	3.4	90
B+	3.3	89
	3.2	88

	3.1	87
B0	3.0	86
	2.9	85
	2.8	84
B-	2.7	83
	2.6	82
	2.5	81
	2.4	80

등급	평점	점수
C+	2.3	79
	2.2	78
	2.1	77
C0	2.0	76
	1.9	75
	1.8	74
C-	1.7	73
	1.6	72
	1.5	71
	1.4	70
D+	1.3	69
	1.2	68
	1.1	67
D0	1.0	66
	0.9	65
	0.8	64
D-	0.7	63
	0.6	62
	0.5	61
	0.4	60
	0.3	59
	0.2	58
	0.1	57
F	0	0
P(급제)	-	-
N(낙제)	-	-

③ 전항에서 정한 성적부여가 부적절한 과목의 경우에는 P(합격) 또는 NP(불합격)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및 평점계산)

- ① C- 이상 또는 P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P학점은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성적정정)

- ① 제출한 성적이 오기 또는 누락되었을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원을 제출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② 성적정정은 성적입력 마감일 이후 15일까지 가능하다.

제25조(수강신청의 변경)

본 대학원 학생은 개강 후 1주 이내의 기간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추가시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과목담당교수 및 학과(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수강)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 ① 본교의 대학원을 포함하여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교 「외국대학연수및연수학점인정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추가이수과목)

- ① 본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이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라 추가이수한 과목의 취득학점은 과정별 수료를 위한 이수학점 및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추가이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④ 추가이수과목 지정과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으로 정한다.

제30조(전과)

본 대학원 내에서 학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단, 학과(전공) 간 통·폐합, BK21 사업 학과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31조(학위종류 및 명칭)

- ① 본 대학원의 동서의학과 대체보완의학전공,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동서의학과 의학전공, 융합건강과학과 융합건강과학전공, 노인학과 노년학전공, 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노년학),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노화의과학), 미래식품학과, 의학영양학과 헬스케어영양학전공은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과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의학영양학)은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 ② 각 과정별로 수여하는 학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32조(학위수여 요건)

- ①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1.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취득한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B0(3.0) 이상인 자
 4.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거나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한 자
- ②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전항의 자격요건 외에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 1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2. 제1저자로서 국내 1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
- ③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 외에 다음 제1호의 논문발표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노인학과 노년학전공의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제 1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
 2. 국내 1급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 ④ 제2항 및 제3항의 논문발표 실적 요건에서 국내 1급 학술지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하고 국제 1급 학술지의 범위는 SCI 및 SCIE 등재지로 하며, 논문발표실적 증빙서류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논문의 투고 또는 게재 서류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논문발표 실적 요건은 각 학위과정별 입학 이후의 실적만 인정하며, 논문발표 실적 증빙서류는 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논문대체)

- ①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 취득예정자는 전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논문을 대신하여 6 학점 이상의 논문대체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논문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 ② 논문대체 과목을 이수하는 전문학위 취득예정자는 전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논문지도I, 논문지도II 과 목의 수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논문대체 과목을 정할 때에는 학과(전공)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각 과목의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때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④ 논문대체를 하였으나 수업연한 내에 논문대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전공종합시험)

- ①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과정은 15학점, 박사학위과정은 21학점, 통합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전공종합시험 시행과목은 본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정하며 본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이수과목 내에서 학기별 시행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전공종합시험의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하며 최종 합격기준은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 합격으로 한다.

제35조(전공종합시험의 시기 및 절차)

- ① 전공종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본 대학원장이 시험 실시 2주전까지 일정을 공고한다.
- ②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학과(전공)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공종합시험의 문제출제, 고사시행, 채점 등 모든 과정은 본 대학원장이 통합하여 시행한다.

제36조(학위지도교수의 선정)

재학생은 입학 후 한 학기 이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학과(전공) 지도교수는 전임교수 및 학생과 협의한 후 본 대학원장에게 학위지도교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학위지도교수의 자격)

- ① 본 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교수업적평가 결과 중 최근 3개년간의 연평균 연구실적이 본교 「전임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해당직급 연구실적 승진요건의 연평균치(연구실적 승진요건÷직급별 최소 근무년수)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교수는 학위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단, 신규임용교수는 임용 후 1년간에 한해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6학기 이내인 교수는 본 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 ④ 공동 학위지도교수가 필요한 경우 본 대학원장은 2인의 학위지도교수를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논문예비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공개발표 한 학기 전에 소정양식의 논문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위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공개발표)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단,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3개 학기 동안 그 효력을 인정한다.
- ② 공개발표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해당학과(전공)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단,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 학자 또는 전문가가 참관할 수 있다.
- ③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학위지도교수는 공개발표를 지도하고 그 실시 결과를 학과(전공)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 ① 학위청구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2외국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41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논문공개발표를 마쳐야 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3. 심사용 논문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5부)
 4. 제2외국어/한국어 논문작성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
- ③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장과 학위지도교수의 협의에 따라 가제본된 논문을 논문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2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는 3인 이상, 박사학위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본교 전임교수 또는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중에서 학위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 중 교외인사는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의 경우는 1인까지,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의 경우는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 ④ 논문심사위원회는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⑤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3조(학위논문의 심사)

-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내용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논문심사의 경우 구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회의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위청구논문 합격 이후, 당해 학기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기 청구논문의 효력은 무효 처리된다.

제44조(학위수여의 결정)

- ① 본 대학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접수한 후 위원회를 열어 학위수여 예정자에 대한 학위수여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 및 장학금

제46조(학생지도)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내규를 포함한 본교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전공) 지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47조(휴학)

-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작성한 후, 전항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위지도교수, 학과(전공)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일반휴학은 매학기 개시 전부터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한자가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에 일반휴학원을 제출할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복학 학기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다.
- ④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며,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통합과정의 경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며, 전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 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전근만을 인정한다.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학 신청한 학기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⑥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의무복무에 한한다.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본 대학원장은 학생이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직후의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49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소정양식의 자퇴원을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전공)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퇴원은 매학기 개시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내규를 포함한 본교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

2. 면학질서를 저해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견책, 근신, 유기정학 처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고, 무기정학과 제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51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2회 또는 통산 3회 받은 자

6.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는 자

제52조(성적경고)

① 매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②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과정에 따라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최대 학점을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으로 제한한다.

③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그 직후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2회 또는 재학 중 통산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제53조(장학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해당 장학금의 수혜요건을 갖춘 자

2.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장학내용은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④ 장학금은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4개 학기, 통합과정 학생에게는 8개 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장학생의 선발은 학위지도교수 또는 학과(전공) 지도교수 또는 전공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⑥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학관련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영어강좌

제54조(영어강좌개설)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영어강좌 시행 후 그 실시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공동기기실,동물실,연구원

제55조(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

- ① 공동기기실과 동물실의 운영 및 연구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공동기기실 및 동물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동기기실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56조(연구원)

- ① 본 대학원의 각 학과 및 전공에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일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1. 연구원 임용계약서(소정양식)
 - 2. 이력서
 -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 4. 경력증명서(해당자)
 - 5. 서약서(소정양식)
 - 6. 추천서
- ③ 일반연구원은 본 대학원 내규를 준수하고 소속 학과(전공) 지도교수 및 추천 전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다.
- ④ 일반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행하는 연구의 특성상 다년간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 ⑤ 일반연구원의 급여는 해당 추천 전임교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연구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장 연구등록

제57조(연구등록)

- ①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각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등록하여야 한다.
- ② ‘연구등록’이라 함은 학위과정 수료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본 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8조(등록절차)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구등록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제59조(자격)

- ①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다.
- ②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60조(연구등록금)

- ① 연구등록금은 수료 후 학위 취득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납부하며, 등록금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10%로 한다.

② 기 납부한 연구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장 외국인학생

제61조(입학전형)

- ①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은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하고, 재정능력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62조(입학전형 시기)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시로 시행한다.

제63조(한국어 구사능력)

-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대한민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자
- ② 입학전형 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입증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도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4조(지원자 제출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외국인학생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
2. 대학(원) 학위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한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학위인증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3.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최종학교 지도교수 추천서
5.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8. 본인 및 직계가족 관계증명서(번역공증본)
9.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미화 \$20,000 상당액 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10. 호구부(중국인 지원자에 한함) 및 부모의 신분증 사본
11.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65조(외국인 등록 등)

- ① 본 대학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6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본 대학원에서 수학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

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수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7조(외국인학생의 건강검진의무)

외국인학생은 입학 후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비는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11장 보칙

제68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1999학년도 2학기에 본 대학원으로 편입한 학생은 본 대학원 정원에 포함된 학생으로 인정되며, 편입학 당시에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에 의해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는 제29조 2항에 정한 박사학위수여자의 국제학술지 발표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연구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본 대학원장은 별도의 연구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위 종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소속 변경 학생이 졸업시 이전 소속인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원할 경우에는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어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소속 변경 학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조 및 제37조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수과목 및 취득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제15조 내지 16조 및 제 18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이전에 동서의학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①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임교수 및 전임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내규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BK21 사업 종료시까지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6시간으로 한다.

③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학적에 관한 사항,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학기당 취득학점에 관한 사항, 학위명칭에 관한 사항,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성적경고에 관한 사항 등을 구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내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1일 개정내규 부칙

제3항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내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1일 개정내규 부칙 제3항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등록에 관한 예외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이미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본 내규 제59조에서 정한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에 관한 예외조치) 본 내규 제33조에서 규정한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에 있어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개정 전 내규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요건에 관한 예외조치) 본 내규 제32조 학위수여 요건 중 제2항 및 제3항의 연구실적 요건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4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4항, 제31조(단, 대체보완의학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4년3월1일부로 시행함), 제32조 제5항,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입학정원과 [별표1]에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 현재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

재적생(수료자 포함)은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③ (논문대체 신청자격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 4기 이상(수료자 포함)의 전문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제32조(논문대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학영양학과 헬스케어영양학전공 신설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과별 설치전공 및 학위명(전공신설)

전문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동서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석사	50명
			의학전공	의학석사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석사	
		융합건강과학과	융합건강과학전공	이학석사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석사	
			노년학전공	노년학석사	
		의학영양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노년학석사, 의과학석사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학영양학석사	
		노인학과	헬스케어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한의학전공	한의학박사	20명
			의학전공	의학박사	
	박사학위	동서의학과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박사	
			융합건강과학전공	이학박사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박사	
		노인학과	노년학전공	노년학박사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노년학박사, 의과학박사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박사	
		의학영양학과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박사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학영양학박사	
			-	이학석사	20명

[별표2]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종 류	지 급 대 상	장학내용	비고
총장장학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입 학 금 포 함
동서의학장학	동서의학발전에 공이 큰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우수연구장학	우수연구교수가 추천하고 원장이 인정한 자	우수연구 교수별 배정액 자율 지급	
경희동문장학	본교 학부과정 또는 석사과정 졸업자	등록금 10%	입 학 금 불 포 함
모범장학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에 모범인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목련장학	가계곤란한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BK연구장학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의 전일제 학생으로서 성적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 우수연구 교수라 함은 본 대학원 전임교원이 SCI 또는 SCIE 논문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명의로 게재완료(print, web 게재)한 자를 말하며, 우수연구 교수는 연간 1,200만원 이내에서 우수연구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음